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2025. 12.

금 융 위 원 회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현행 불법사금융 대응 체계	3
1. 불법사금융 대응 현황	3
2. 보완 필요 사항	4
III.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5
1. 피해자 중심의 지원 체제로 개편	7
2. 피해구제의 효과성 제고	10
3. 제도 개선을 통한 불법추심 유인 억제	13
IV. 향후 일정	16

I. 추진 배경

- 불법사금융은 단순 대출이 아닌,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악질 범죄
 - 제도권 금융은 금전대차의 '경제적 계약'이 본질 → 돈을 빌리는 과정은 어려우나, 빌린 후에도 채무자가 대등당사자로서 권리 유지
 - 반면, 불법사금융은 금전대차를 매개로 한 '인신 구속계약' →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협박·괴롭힘이 수반되는 계약
 - 불법사금융 이용규모의 정확한 변동은 추정하기 어려우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 건수는 최근 지속 증가 추세*
- * 금감원 불사금 신고(건): ('22)10,350 → ('23)12,884 → ('24)14,786 → ('25.1~11월) 16,540
- 새 정부 들어서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 * **불법추심**, 보이스피싱, 전세사기를 제도적으로 막는 등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강구('25.8.21, 대통령님 지시사항)
 -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로 되는 초고금리 반사회적 대부계약 범위를 확대(연 이자율 60% 초과)하여 불법사금융 방지기반을 강화
-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은 끊임없이 진화
 - 정부의 대응이 강화되면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신종수법 등을 동원한 영업 형태를 통해 이를 회피하는 형태가 반복
 - 특히, 비대면·익명성을 이용하여 불법대부 및 추심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수사·단속, 피해구제 등에 어려움이 존재

➔ 날로 교묘·지능화되는 불법사금융 양태에 대응해 총리실 중심 관계부처가 철저히 공조,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유인을 제거

<최근 불법사금융 양태>

① **(온라인화)**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 전화 사용 영업 대신 **온라인***을 통한 추적이 어려운 **비대면·익명** 영업으로 전환

*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인터넷 게시판 및 SNS 플랫폼 광고 등

② **(합법 가장)** 등록 여부 확인 강화되면서 **등록대부업** 명의를 끼고 **실제로는 불법사금융을** 제공하는 기망성 거래* 성행

* (예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에 등록대부업자 명의로 광고 → 해당 번호로 연락시 무응답 → 잠시후 불사금융업자가 대부수요자에게 연락하여 대출 권유

**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87.3%도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24년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대상 실태 조사 결과)

③ **(전문화·점조직화)** 모집팀, 대포통장·대포폰 알선 조직(업체), 전주(錢主), 채권추심팀 등으로 **분야별로 구획***되고 **전문화**

* 조직 내에서도 역할 별로 분업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팀 내에서도 직접적인 관리자 연락처만 아는 등 철저히 구획·운영

④ **(인신구속성)** 대출계약시 **각종 불법적 정보·서류** 등을 징구하고, 추후 불법추심시 피해자 협박 및 신고방지 수단으로 악용

* (예시) 계약시 얼굴사진 및 지인 연락처 요구 → 연체시 나체사진 요구, 지인연락 협박

⑤ **(렌탈채권)** 시효 완성 또는 **채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렌탈채권을 대량 매입하여 부당하게 추심하는 전문업체도 등장

* 렌탈 제품을 반품하거나 렌탈계약 취소 등으로 채권이 성립되지 않았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입증할 길이 없어 추심에 무방비

【사례 1】 : ① 온라인화 / ② 합법 가장 / ③ 전문화 / ④ 인신구속성

대부중개사이트에 대출문의글을 올린 B씨는 사이트에 등록된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연락을 받은 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이용 → 연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해 SNS에 유포하는 한편, '배달책' 아르바이트가 범죄수익을 ATM에서 인출하는 방식을 통해 수사를 회피

【사례 2】 : ⑤ 렌탈채권

C씨는 렌탈사업자로부터 가전을 렌탈하여 이용하였으나 렌탈료를 미납 → 추심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Y사가 채권매입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추심을 지속

Ⅱ. 현행 불법사금융 대응 체계

1 불법사금융 대응 현황

불법사금융 예방 측면

- 불법사금융의 경제적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및 처벌 강화** (‘25.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

* 연 이자율 60% 초과,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으로 체결된 계약 등

** 무등록 불법대부업 처벌 : 징역 5년·벌금5천만원 이하 → 징역 10년·벌금5억원 이하

-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확대**

* 연간공급액(조원) (‘21) 5.3 → (‘22) 7.3 → (‘23) 7.2 → (‘24) 5.6 → (‘25.11월) 6.8

** 예)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액(100만원 이내)을 빌려주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23.3월 출시) 지원(‘25.1~11월 1,226억원 공급)

- 아울러, 인터넷상의 1)불법대부 광고 게시물과 2)전화번호를 AI 기반 불법정보 감시시스템이 단속·차단중(‘20.1월~)

* 1)방심위 심의를 거쳐 방통위 차단명령,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여 삭제

** 불법금융광고 차단요청(건): (‘21)16,902 (‘22)17,436 (‘23)20,153 (‘24)19,870 (‘25.11월)23,352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측면

- 금감원에 피해신고시 경찰 수사의회*(‘01.4월~) 하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채무자대리인**을 무료 선임** (‘20.1월~)

* 불사금 피해신고·상담(건): (‘22)10,350 → (‘23)12,884 → (‘24)14,786 → (‘25.1~11월) 16,540
경찰 수사의회(건): (‘22) 377 → (‘23) 398 → (‘24) 401 → (‘25.1~11월) 443

** 채무자대리인 지원(건): (‘21)4,841 (‘22)4,510 (‘23)3,249 (‘24)3,096 (‘25.11월)10,038

※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선임시 채권자는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추심 가능(채권추심법 §8-2)

- 불법추심 전화번호, SNS 계정 및 게시물 등 차단*(‘25.7월~)

* 불법추심 전화(7.22일~11월말): 289건, 라인 계정(7월~11월말): 121건 등

- 피해자가 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따른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등도 진행

* 소송구제 추이(건): (‘21) 30 → (‘22) 28 → (‘23) 12 → (‘24) 162 → (‘25.11월) 122

2 보완 필요 사항

① 1)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및 2)불법사금융 처벌 강화의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핵심 기반은 마련

- 다만, 이러한 민·형사 규정이 현실에서 실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집행(수단) 필요

⇒ 범죄자금(대부원금)·수익의 효과적인 몰취를 위해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의 신속 동결, 피해구제-수사간 연계 강화 등 필요

② 불법사금융 대응 체계가 정책 공급자 위주로 편제

- 1)각 구제기관의 역할이나 전체적인 체계·절차를 알기 어렵고, 2)신청·신고 이후 기관연락·진행상황 안내나 사후 관리가 미비

⇒ 피해자 중심으로 보완·재배치하고 조력 방식도 정비 필요

③ 대부업법 개정으로 지자체 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 플랫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불법사금융의 온상으로 지적

- 관리 사각지대인 렌탈채권을 매개로 한 불법추심 문제가 대두

⇒ 등록 대부(중개)업이 불법사금융의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렌탈채권 불법추심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조치 필요

④ 소액·급전 등 서민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제도권에서 수용하지 못하거나 장기연체로 제도권에서 소외되어 불가피하게 불법사채를 이용

⇒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정책서민금융 공급뿐만 아니라 장기연체·추심 발생 구조의 개선 등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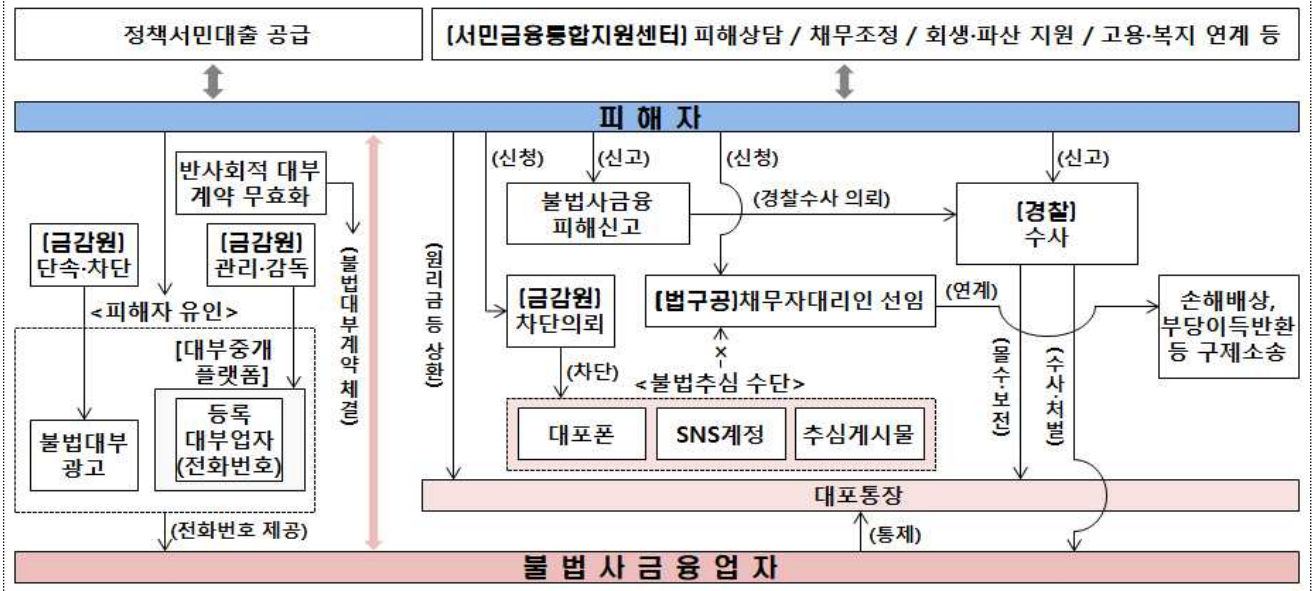
Ⅲ.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

[추진목표] 불법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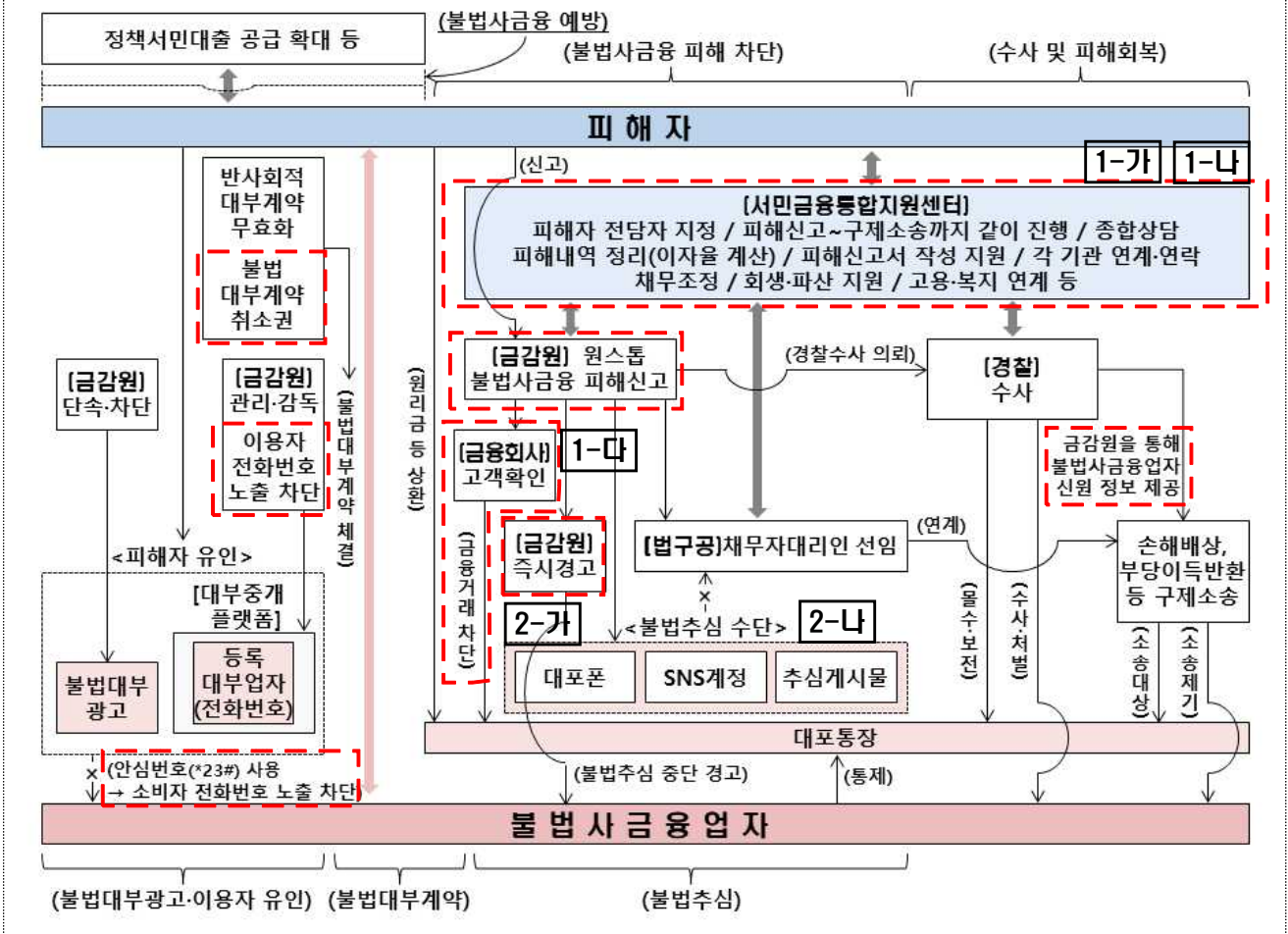
[추진 전략]	[추진 과제]
1.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 나.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체계 구축 다.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신속 차단
2. 불법추심은 즉시 차단, 처벌까지 철저히	가. 불법추심 즉시 중단 위한 초동조치 실시 나. 광범위한 불법수단 신속 차단 다. 피해구제 조치와 수사간 연계 강화
3. 신종 수법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빈틈없이	가. 등록 대부업 및 신용정보 관리 강화 나. 렌탈채권 추심 관리 제도화 다. 서민의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 억제

<현행 불법사금융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체계>



※ 개선사항 : []

<불법사금융 예방 및 피해자 구제 체계 개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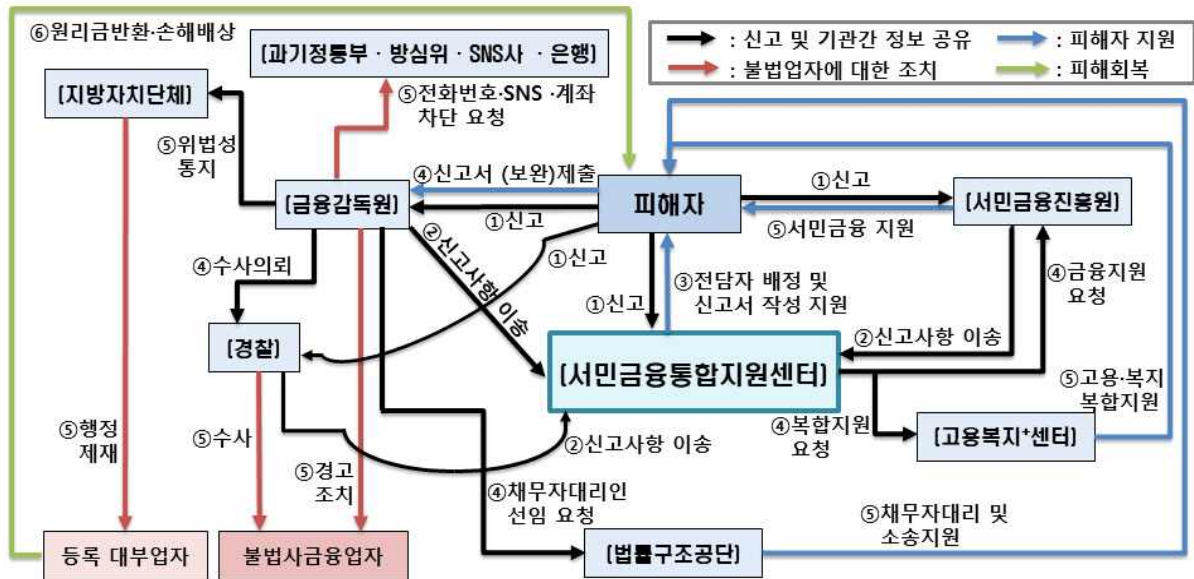
* 1-가.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 1-나.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체계 구축

1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

-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방문·연락시 전담자를 배정받아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 수사의뢰, 소송구제 등 모든 과정을 같이 진행 → 피해자의 불안을 낮추고 신뢰도 제고
- 전담자는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이해와 각 지원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피해구제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조정·지원 (Manage)

<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체계 구조도 >



< 진행과정 >
 ① 신고 → ② 신고사항 서민센터이송 → ③ 전담자 배정 및 신고서 작성 지원 → ④ 신고서 제출 및 각기관에 전파 → ⑤ 각기관의 조치 → ⑥ 소송 통한 피해회복

- 피해자는 전담자를 “언제든 연락 가능한” 상담창구로 활용, 피해신고 지원은 물론 불법추심 중단 여부 등도 공유하고 사후 관리를 받음
- 금감원·법률구조공단·경찰 등 각 기관에서도 전담자를 피해자와 소통하는 창구로 활용하여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제고
- 아울러, 피해자는 경제활동 복귀에 필요한 채무조정, 정책대출 및 고용·복지 상담까지 한자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연계 가능
- ⇒ 전담 체계는 지방 소재 피해자도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8대 권역*에 우선 도입, 성과를 보아가며 점진적 확대(☞ '26.1분기부터 시행)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수원),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제주도 (총 15명)

나.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체계 구축

- 한번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로 초동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
 - * 전화번호(대포폰), SNS 계정, 온라인 게시글 및 금융계좌(대포통장) 등
 - 불법사금융업자 사항, 알게된 경로, 불법대부 내역(피해내역서)* 및 불법추심 내용, 소송 의향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 * 불법대부 계약일, 최초 차용액 및 입금일, 상환내역 및 잔존원리금 등

-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금감원에 신고
 - 금감원은 불법추심이 즉각 중단되도록 하는 초동조치 후, 경찰 수사 의뢰, 신고내용에 따른 각 불법수단 차단 및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에 진행
 - 경찰의 수사 결과를 회신받으면 법률구조공단에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구제 청구 의뢰
 - 피해자는 피해구제 과정에서 불법추심 중단 여부 등을 전담자 및 각 구제기관과 긴밀히 공유하며 각 절차를 진행

- 단, 전화번호·SNS계정 이용중지, 채무자대리인 등 기존 개별 신청제도는 개별적·추가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존치

- ⇒ 원스톱 피해신고 체계는 금감원의 온라인 시스템 개편에 걸리는 시간(6개월)을 고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전담체계와 함께 오프라인부터 '26.1분기 내 시행

다.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신속 차단

-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를 신속히 그리고 실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제도(강화된 고객확인)를 활용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Enhanced Due Diligence)

- 고객확인(CDD: Customer Due Diligence)은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신원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통상 계좌 개설시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일회성 거래시 수행
- 금융회사는 기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CDD)보다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해야 함
 - 고객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규정

- 고객확인 재이행을 통한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차단 방안

- (대상) ① 피해자가 금감원에 신고(불법사금융 피해신고)하거나, ② 금감원이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한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원리금·연장비·지연금 등을 상환(송금)한 상대방 계좌

- (절차) 금감원이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
→ 금융회사는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하고 해당 고객(계좌의 명의인)에게 안내 → 고객확인 재이행시 계좌거래 허용

* (제공정보) 불법사금융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피해사실 상담확인서

< 고객확인 재이행 내용 >

- 금융회사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계좌(통상 대포통장)로 강하게 의심되고 범죄에 재사용될 가능성이 큰 초고위험 계좌로 보아 아래 항목을 중심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

- (1) 고객의 신원 확인
- (2)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검증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
- (3) 거래의 목적 및 자금의 원천 확인. 특히, 금감원에서 제공한 불법사금융 관련 거래내역에 대해 그 목적과 자금의 원천(성격)을 필수적으로 확인

-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강화된 고객확인 실시(고객확인 전까지 거래정지)

- (조치) 다음 금융거래를 하는 때까지 고객확인 완료 필요 → 고객의 정보제공거절 등으로 고객확인 불가시 거래관계 종료

* 고객이 신원확인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거래관계를 종료하여야 함(특정금융정보법 §5-2④)

- (기간) 원칙적으로 고객확인 재이행 전까지

2 불법추심은 즉시 차단, 처벌까지 철저히

가. 불법추심 행위 즉시 중단을 위한 초동조치 실시

- (초동대응 강화) 채무자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전 바로 불법 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구두 또는 문자로 경고*

* '25.9월~11월말까지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가 확인된 1,397건에 대해 즉시 추심 중단 및 거래 종결 등 요청

- 또한, 원금·이자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시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

* (예) '25.7.22.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음을 통보

※ 경기도(경기복지재단)의 경우 경기도민이 피해신고시, 2일 이내 구두·문자 경고로 추심이 중단되도록 조치중 → 경기도 사례의 전국 확대방안 추진

* '24년 中 5,522건 불법추심 중단을 지원하고, 이중 5,411건은 채무종결(98.0%)

- (경찰의 안전조치) 온라인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에서 행정 연계*를 통해 보다 빠르게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금감원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경찰에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해당 경찰서에 연락

** 1)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임시숙소·스마트워치 등) 및 2)가해자에 대한 경고 등

나. 광범위한 불법수단 신속 차단

- 피해자의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금감원이 불법추심 전화번호·SNS계정 및 불법추심 게시물 등 불법수단 신속히 차단 조치

[①불법추심 SNS계정]

- 카카오톡·라인은 자사 SNS를 통해 불법추심을 한 계정에 대한 차단 조치를 기시행('25.6.16일~)
- 미도입한 해외 SNS 등도 불법추심을 한 계정에 대한 차단조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

- 아울러, 피해자 보호 내실화, 수사 연계 등을 위해 금융당국이 불법추심을 한 SNS계정 정보*를 SNS사업자에 대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대부업법 개정)

*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가입일, 해지일 등

[②불법추심 게시물]

- 금감원이 AI 기반 불법정보 감시시스템을 통한 단속 대상*을 현 불법대부광고에서 불법추심 게시물까지 확대

* 불법대부, 작업대출, 통장매매, 개인정보매매, 휴대폰소액결제·신용카드 현금화

- 금감원은 SNS플랫폼에도 단속정보를 제공하여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방심위 심의) 조치 전 자율적인 신속 차단*을 도모

* 방미통위 명령전(통상 3주 소요) SNS 운영사가 스스로 차단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방미통위 등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범정부 TF」를 통해 SNS플랫폼별 단속·차단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 추진

[③불법추심 전화번호]

- 불법대부·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금감원 등의 차단 요청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1년간 차단 조치 중* (기시행)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는 '16.7월부터, 불법대부·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25.7월부터 금감원 등이 과기정통부에 차단요청 가능토록 대부업법 개정

- 불법추심 SNS계정에 연동된 전화번호도 불법추심 전화번호로 간주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 (☞대부업법 개정)

* 불법추심에 이용된 SNS 계정 정보(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가입일, 해지일 등) 조회권 신설하면서, 조회결과 확인된 전화번호 등도 차단

[④대포통장 및 범죄수익 계좌 차단]

- 불법추심에 직접 이용된 계좌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해당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 범죄수익 이체된 집금 계좌도 동결 추진(☞ 대부업법 개정)

*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범죄수익이 이체된 계좌정보를 상대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각 금융회사가 점검·동결

다. 피해구제 조치와 수사간 연계 강화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 금감원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여 채무자대리인을 무료 선임
 - 채무자대리인은 현재 6개월을 지원하고 1회 연장이 가능하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제한 없이 지원
-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보후 불법추심 중단 또는 지속 여부를 전담자와 함께 사후 관리하고, 불법추심 지속시 추가 조치

[경찰 수사의뢰 및 결과 회신]

- 경찰 수사의 효과성·적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신속히(3일 이내) 수사 의뢰(경찰청 본청 및 관할 시·도경찰청)
- 경찰청 본청은 수사 상황을 관리하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사건 종료시 금감원에 수사 결과(사건번호 포함)를 회신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 소송구제]

- 금감원은 피해자의 의향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에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구제를 의뢰
 -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피고인)를 특정*하여 소송할 수 있도록 사건번호도 같이 제공
- * 법률구조공단은 사건번호를 통해 법원에서 범죄자 인적이 기재된 공소장을 입수
- 법률구조공단은 실질적으로 금전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동결된 계좌내 범죄수익을 소송 대상으로 활용

3 신중 수법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빈틈없이

가. 등록 대부업 및 신용정보 관리 강화

- **(대부업 등록요건 관리 강화)** 대부업 등록증 악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가 영업에 필요한 **적정한 공간·시설·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유지***하는지 관리 강화

* ¹⁾실제 영업이 불가능한 공유오피스, 주택 등을 사무실로 등록한 경우 등록 거절, ²⁾상향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고 유지하는지 등

- **(대부광고에 안심번호 사용)**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배너 광고 등 온라인 대부광고시 대부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대부업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감독상 명령권 발동)

* 전화발신시 *23#을 앞에 붙이면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수신자로 전달되지 않음
☞ 온라인 대부광고에 반드시 *23#을 붙이도록 감독상 명령 발동

- **(신용정보 등록·활용)** 대부이용자가 대부계약을 포함한 모든 대출을 온라인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위 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 후 신속히 신용정보를 등록*토록 지도

*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등록의무가 있는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에 대해 신용정보 등록 토록 **감독상 명령** → 未이행시 **시정명령** → 시정명령도 未이행시 **제재**(영업정지 등)

- 신용정보 등록의무가 있는 업자가 이를 미이행할 경우 “즉시” 영업정지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 (☞대부업법 개정)

- 신용정보 등록을 통해 단기에 여러건의 소액 대부로 **과잉대부 금지 규정***을 우회하지 못하도록 개선**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시 대부이용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하여야함. 단, 청년·고령층 100만원, 그 외 300만원 이하의 대부는 제외(대부업법 §7①)

** 과잉대부 예외 판단시 신용정보원을 통해 일주일 이내의 대부액을 합산·산정

- **(신용정보로 등록되지 않은 대부계약의 취소)** 대부이용자가 대부 계약 후 신용정보원에서 대부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권***을 부여(☞ 대부업법 개정)

* (현행) ¹⁾금융회사대부업자 사칭, ²⁾대부계약서 미교부, ³⁾대부액·이자율 등을 허위 기재한 경우 취소 가능 → (개선) 신용정보원에서 대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 합법으로 가장한 불법대부계약의 경우, 피해자는 신용정보원에서 대부계약 현황 확인서를 받아 쉽게 종결(취소) 가능

나. 렌탈채권 추심 관리 제도화

- **(렌탈채권 매입추심업)** 렌탈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려는 자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 대부업법 개정*)

* (현행) 대부업법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려는 자를 등록하도록 규정("대부채권매입추심업") → (개선) 렌탈채권까지 확대

- 렌탈채권을 양도받은 자도 현행 채권추심법 적용 대상이므로 렌탈채권 매입* 추심행위는 대부업법에 따라 관리 가능

* 렌탈채권의 추심을 위탁받는 경우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관리·감독 대상

- 다만, 기업 경영의 자율성 차원에서 제3자가 아닌 렌탈업체 본인이 연체를 관리하는 행위(추심)는 금융법령 미적용

-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시효 완성 렌탈채권의 추심 등 부당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마련

* 예) ¹⁾추심 착수시 채무자 통지, ²⁾추심 총량제, ³⁾채권 추심과정에서 부당하게 성립된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인지시 환매 조치 등

- **(렌탈 매입채권 조회)** 소비자가 추심 대상인 렌탈 매입채권 내역을 조회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에서 **조회 기능** 제공 등도 검토*

* 대부업법령 개정에 따라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자는 금융위 등록대부업자로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영업정지까지 가능

다. 서민의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 억제

- **(금리부담 경감)** 연체자 등 금융배제계층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부담을 5~6%대로 대폭 완화(年 2천억원 공급)
 - '26년부터 금리(現 15.9%)를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시 납부이자 페이백(총이자 50%)을 신설하여 실질 금리부담을 6.3%로 완화
 - *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 → 전액 상환시 실질 금리부담은 5%로 완화
 - ※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

-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금융권·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27년)하여 안정적·탄력적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 기금 손실에 대한 정부 손실보전 및 금융회사의 상시출연근거를 마련하여 재원의 안정성 확보
 - 법정기금* 설치 및 법정 보증배수 확대(15 → 20배)를 통해 공급의 탄력성 제고
 - *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30% 內 국회 승인 없이 공급 확대 가능

- **(장기연체채무 신속 정리)**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장기연체채무*를 채무조정기구(캠코 출자회사)가 일괄 매입하여 소각 또는 채무조정
 - * 7년 이상 연체 + 5천만원 이하 무담보 채무
 - 관계부처 등의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전달받아 상환능력(재산·소득 등) 심사 →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소각*
 - * 그 외 채권은 신복위 기준(원금감면 70%+분할상환 최장 8년)보다 강화된 채무조정

- **(장기연체 발생구조 개선)** 장기 소액연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부활 제한 등 추진
 - * 채권자로서 추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원칙적으로 만기)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로,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경우 5년

IV. 향후 계획

-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및 행태가 날로 교묘·지능화하고 있으므로 '즉각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 시행이 시급한 상황
 -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내년 1분기내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원입법으로 신속 추진
-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책 과제는 지속 검토·보완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
 - * 예) 정책서민금융, 금융권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등을 통한 서민 자금수요 대응강화

〈세부 추진 과제별 시행 일정〉

세부 추진 과제	조치 사항	시행
1.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가.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	전담인력 채용 및 교육	'26.1분기
나. 원스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체계 구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26.1분기
다.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신속 차단	금융회사 차단시스템 정비	'26.1분기
2. 불법추심은 즉시 차단, 처벌까지 철저히		
가. 불법추심 행위 즉시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실시	금감원 인력 채용	'26.1분기
나. 광범위한 불법수단 신속 차단		
- SNS계정 정보 조회	대부업법 개정	'26.7월
- 불법추심 게시물 단속	SNS플랫폼사 협의	'26년중
- SNS계정 연동 전화번호 차단	대부업법 개정	'26.7월
- 대표통장 명의인의 타계좌 차단 등	대부업법 개정	'26.7월
다. 피해구제 조치와 수사간 연계 강화	경찰 업무 절차 마련	시행중
3. 신종 수법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빈틈없이		
가. 등록 대부업 및 신용정보 관리 강화		
- 대부업 등록요건 관리 강화	업무시설 관련 유권해석	'26.1월
- 대부광고시 안심번호 사용	감독상 명령권 발동	'26.1분기
- 대부업 신용정보 등록 관리감독 강화	감독상 명령권 발동	'26.1분기
- 과잉대부 금지조치 예외 축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26.2분기
- 신용정보 미등록 계약 취소권	대부업법 개정	'26.7월
나. 렌탈채권 추심 관리 제도화		
	대부업법 개정	'26.7월
다. 서민의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 억제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인하	시행	'26.1월
-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서민금융법 개정	'26년중
- 장기연체채무 정리	정책 발표	시행중
- 장기연체 발생구조 개선	정책 발표	'26.1분기